

No. 10

행정 명령

개별적 서비스 계약 비용 절감

주는 재정적 위기에 있고, 지출을 조절하고 비용 절감을 달성하도록 실현가능한 방법을 사용해야만 하므로;

2011-12년도 행정 예산은, 공유 희생 및 지출 절감의 원칙을 전제로 하여 다양한 이해 범위에 걸쳐 주 재정부서를 정돈할 부담이 커지는 이 위기를 다룰 프로그램을 설정하였으므로;

2011-12년도 행정 예산은 특별히 주 기관들로부터 중요한 비용 절감을 요구하여, 제안된 예산안이 운영비의 10%의 절감을 가져오게 되므로;

주는 계약의 수와 비용 절감을 위해 개별적 서비스 계약 검토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주는 할 수 있는대로, 납세자들의 돈으로 지불되는 최선의 계약비용을 보장해야 하며, 과거의 계약 관행을 무조건 따라할 수 없으므로;

이제, 그러므로, 나, Andrew M. CUOMO 뉴욕 주지사는, 헌법 및 뉴욕주 법에 의해 내게 확립된 권한에 의해, 다음의 사항을 명령합니다:

1. 다음의 정의들은 이 명령의 목적에 적용됩니다:

- a. “밀접하게 연계된 비영리 단체 (Closely Affiliated Not for Profit Organization)”는 주 재정법 섹션 53a의 다섯째 부분의 (d) 단락에서, 또는 그 계승자들이, 정의하는 특정 주 기관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기업을 뜻합니다.
- b. “개별 서비스 계약 (Personal Services Contract)”은 주 기관이 어느 개별적인 단체와 맺는 계약, 즉 기관이 계약비용의 대부분이 계약자의 보상에 기여한다고 믿는 관계에서의 계약을 뜻합니다. 개별 서비스 계약은 그 주 목적이 평가, 연구 및 분석, 정보 처리, 컴퓨터 프로그래밍, 공학기술, 환경 평가, 보건 및 정신건강 서비스, 회계, 회계감사, 법 관련 및 유사 서비스 계약을 포함하며 총 이십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계약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을 위한 “개별 서비스 계약”은 다음의 계약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i. 가격이 연방 또는 주 법에 의해 조종되지 않는 계약;
 - ii. 원자재 구매를 위한 계약;
 - iii. 반드시 경쟁 입찰을 통해 갱신해야 하는 계약;
 - iv. 주 재정법 § 162에 명시된 대로, 선호하는 계약자가 있는 계약; 또는
 - v. 행정법 15-A 조항 준수에 필요한 계약 및 거기에 따라 발행된 모든 규정.
 - c. “주 기관 (State agency 또는 agency)”은 모든 주 대행기관, 관공부, 부서, 국, 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을 뜻합니다.
 - d. “단일 계약 (Single source)”은 주 재정법 § 163에서 제시한 뜻을 가집니다.
 - e. “갱신 (Renewal)”은 이미 주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새 계약을 통해 동일한 제공을 계속할 수 있는 기업과의 새 계약 협상을 뜻하나, 기존에 특정하게 제공된 가격의 계약 연장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2. 개별 서비스 단일 계약이 만료되면, 각 주 기관은 계약자가 예전 계약의 연간 비용에서 최소10% 감소된 (“의무 절감 목표”) 주 연간 비용에 대한 합의를 할 때에만 이와 같은 계약의 갱신에 동의해야 합니다. 단, 4 문단에 나온대로 예외는 있습니다. 이러한 절감은 가격 조정에 의하거나, 주에 대한 합계 가치가 예전 연간 비용의 최소한 10%가 되는 다른 조치에 의해 도달할 수 있습니다.
 3. 어느 주 기관이라도 이 명령의 섹션 2에서 제공된 계약 비용 절감을 보증할 수 없다고 결정하면, 그와 같은 계약 갱신의 어떤 서명이나 동의 전에 주 운영부 책임자 (Director of State Operations)에게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a. 달성된 절감을 진술합니다; 그리고
 - b. (1) 기관이 절감 가격으로 대안 계약자를 찾으려는 것을 포함하여 절감을 달성하기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을 설명하고, 그러한 절감을 달성할 수 없다는 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또는 (2) 예전의 관행만으로는 이 명령에 순응하지 않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이 명령의 섹션 1에 제시되지 않은 어떠한 법적 제한을 포함하여, 그러한 노력이 만들어질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 문단으로 성명을 제출하는 기관은 주 운영부 책임자 또는 그 지정인의 승인 없이는 계약 갱신을 계속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4. 2 문단에서 다른 계약에 추가하여, 각 주 기관은, 기관에게 동일하거나 더 높은 비용으로 계약을 유지할 선택을 공급하는 개별 서비스 계약의 만료에 앞서, 모든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같은 서비스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획득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의 방법들을 포함합니다: (a) 저렴한 가격 조건의 수용에 대하여 계약자와 논의; (b) 계약의 재입찰이 더 큰 비용 절감을 만들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 그리고 (c) 그 계약과, 그 동일한 계약자와 계약되어 있는 다른 계약들과의 종합을 통해 절감이 달성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주 기관 재설계 및 효율성 (State Agency Redesign and Efficiency) 책임자와의 협의. 이러한 어떤 갱신 이전에, 주 기관은 주 운영 책임자에게 그 단계 및 갱신 결정을 위한 이유 등에 대해 조언을 해야 합니다.
 5. 주 운영 책임자는 종종 특정 종류의 계약 또는 특정 기관에 의한 계약에 대한 의무 절감 목표 신청서를 검토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들에게 어느 계약을 위한 어느 목표 비용을 내리거나 올리도록 서면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6. 모든 주 기관은 이 명령에 제시된 것 이외의 계약비용을 절감할 지시를 받습니다. 이는 의무 절감 목표를 초과하는 계약 갱신 비용 절감을 포함합니다.
 7. 기관들은 그들의 개별 서비스 계약 비용 절감을 위해 다른 모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 장려됩니다. 기관들은 모든 도움을 제공해야 하며, 계약자들을 도와, 부계약 비용을 포함하여 그들의 비용을 절감하도록 지원이 보장되어 그들이 이 명령에 제공된 대로 절감을 달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8. 행정 명령 No. 4에 의해 설립된 지출 및 정부 효율성 위원회 (The Spending and Government Efficiency Commission, “위원회”)는 계약 수 및 비용 절감을 조사하기 위해 개별 서비스 계약에 대한 주의 관행을 검토할 것입니다.
9. 이 명령은 다음의 사항과 관계없습니다:
- a. 법에서 허락하는 방법으로 어떤 기관을 통해 들어온 계약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 b. 어느 경쟁 입찰 또는 법이나 규정에서 제시한 다른 조달 필수조건으로부터 어떤 기관을 해제하는 것;
 - c. 어느 제 삼자에게 이 명령의 조건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법적 권리를 제공하는 것;
 - d. 어떤 계약에 공공 당국, 밀접하게 연계된 비영리 기관, 또는 주의 부서를 포함하여 다른 단체를 적용하는 것; 또는
 - e. 주 감사관 또는 법무부 (Department of Law)에서 주 계약들을 검토하는 과정에, 어떤 식이랴도, 영향을 끼치는 것.

이천 십일년 삼월 이일 Albany시에서 내게 주어진

권한 및 주 인사의 권한에 의함.

주지사

주지사 비서실장